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6. 11. 30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11월 12일

○ 회부일자 : 1996년 11월 12일

3. 제 안 이 유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전문개정('95. 8. 4 법률 제4964호, '95.12.30. 대통령령 제14883호)됨에 따라 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 조정하고, 설비 및 교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유해업소와의 인접한 장소의 범위등에 관한 조항등을 개정함으로써, 학원의 자율성과 주민의 사회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평생교육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 요 골 자

○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른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으로 정함

- 학원의 시설 규모를 완화함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실습 및 교구기준에 대하여 교습과정 특성상 일반적 기준이 필요한 교습과정에 한하여 기준을 정하고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등록 기준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을 시설규모 완화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시설면적 증가에 따라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증원할 경우에는 설비 및 교구를 적정하게 추가로 갖추도록 함
- 학원의 부제 교습횟수를 완화함
- 학원과 유해업소와의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지상 1층의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수평거리가 20미터 이내인 장소와 위 이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및 직근하층의 장소로 정함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감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해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
-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수강료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 부터 10일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된 수강료 등은 교습과정 변경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함
- 동일 건물안에는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설립자 요건, 설립자 변경, 감사자격, 수강료 징수는 법령에 규정 하였으므로 삭제함

-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조례 시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평생 학습기회 부여와 학습자 편리 도모를 위하여 학원 설립기준을 완화, 교습 과정을 간편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 학원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감사기준을 강화 하는등의 취지(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95. 8. 4. 법률 제14964호) 및 동법 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83호 전문개정)에 따라 개정하고

자율화에 부응하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것(조례안 제16조 2항 규정 삭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제출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각계 의견수렴 및 타 지역과의 비교 검토는 하였으며, 민원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임

또한 조례안 제11조4항 규정을 삭제함에 있어 자율화에 의하여 남녀공용 독서실이 운영 된다면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착오적 전례에 비추어 충분한 경험적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할것이며

실내 개방시간이 24시간일 경우 수면실, 열람실등을 고려할때 시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을 60㎡의 규모로 한것은 적정하게 된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